

UNGC Communication on Engagement

-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

2019. 4.



차 례

1. UNGC 10대 원칙 지지성명	3
2.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소개	4
3. 보고서 개요	6
4. UNGC 원칙 이행	7
• 인 권(Human Rights)	8
• 노 동(Labour)	12
• 환 경(Environment)	18
• 반부패(Anti-Corruption)	22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성동구내 공공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자치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기 위하여, 성동구와 협력하여 모든 임직원이 앞장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22일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한 이래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4대 분야 10대 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기업, 국민들에게도 유엔글로벌콤팩트의 가치를 전파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을 적용한 다양한 지원정책 및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 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범국민적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구촌 인류의 공동번영을 위해 적극 앞장설 것입니다.

본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보고서(UN Global Compact Communication on Engagement)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까지 2년간의 기관의 활동내용과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참여보고서를 통해 기관의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준수 의지와 지난 2년간의 활동상황을 이해관계자와 공유함으로써 이행성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핵심가치를 앞장서 이행함으로써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정신을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 종 수



■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성동구내 공공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자치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 연혁

- 2002. 08. 공단설립 기본계획 수립
- 2004. 03.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공포
- 2004. 10.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창립
- 2008. 04. 한국서비스품질 인증 획득
- 2009. 12. 개인정보보호마크 인증 획득
- 2013. 12. OHSAS18001 인증 획득
- 2015. 11. 날씨경영 인증 획득
- 2016. 01. 지방공기업학회 경영혁신 우수기관 선정
- 2016. 06. 정부 3.0우수기관 선정(국무총리 표창 수상)
- 2016. 07. 유니세프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인증 획득
- 2016. 10.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 획득
- 2016. 12.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획득
- 2017. 08. 2016년 경영평가 최우수공기업 선정
- 2018. 04. 열린혁신 우수기관 선정

■ 사업분야

- 성동종합행정마을 등 공공청사 관리 사업
-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등 주차편의 제공 사업
- 체육 및 문화강좌 등 주민 여가활동 지원 사업
- 공중화장실, 현수막지정계시대, 보도상물청소 등 도시환경사업
- 자원회수센터 등 도시재생사업
- 어린이집, 경로복지관 등 복지시설 사업

□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청사



□ 성동종합행정마을



□ 공영주차장



□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 보도물청소



□ 용답어린이집



□ 대현경로복지관



■ 조직·인력

● 조직: 1실 6팀



● 인력: 총 353명

(2018. 12. 31. 기준)

계	임원	정규직	유기계약직	시간제근로자
353	2	253	2	96

● 부서별 주요업무

구분	주요업무
안전감사실	감사, 조사, 청렴활동, 고객서비스관리, 고객만족도, 산업보건안전, 시설물관련 안전관리 종합계획
경영혁신팀	사업계획수립 및 조정, 예산편성·관리 및 대외기관 업무 총괄, 인사·노무관리, 자금운영·관리, 계약, 홍보, 복리후생, 전산, 통신, 홈페이지, 개인정보 등
시설관리팀	공단청사, 성동종합행정마을, 성동보건소, 왕도동복합청사, 대현경로복지관, 용답어린이집, 현수막게시대
환경개선팀	자원회수센터, 재활용센터, 공중화장실, 보도상물청소,
주차사업팀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견인보관소, 부정주차단속, 자전거교통안전체험학습장
생활체육팀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대현산체육관, 살곶이물놀이장, 살곶이야구전용구장, 금호스포츠센터
열린체육팀	열린금호교육문화관, 마장국민체육센터, 금호공원체육관, 마장테니스장, 응봉테니스장, 응봉축구장·풋살장

■ 발간목적

-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보고서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이행사항과 성과를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과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보고기간

- 보고대상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추세 비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과거의 활동 및 성과에 관한 자료도 포함하였습니다.

■ 보고서범위

-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10대원칙 전분야

■ 보고서 작성지침

- 본 보고서는 이행사항 및 성과에 대해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발간하는 참여보고서로서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G3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였으며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원칙에 따라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그동안 활동한 사례들입니다.

■ 작성방법

-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후 COE 작성을 위해 준수해야 할 핵심가치 및 부서별로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반기별 COE 작성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회의 실시하여 목표설정과 활동사항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작성주기

-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의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보고서는 2년 마다 정기적으로 발간됩니다.

■ 제출일 : 2019년 4월 10일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2015년 4월 22일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여 10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10대원칙

[인 권]

(원칙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의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2) 기업은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노 동]

(원칙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해야 한다.

(원칙4)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여야 한다.

(원칙5) 기업은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여야 한다.

(원칙6) 기업은 고용 및 업무에 있어서 차별을 철폐하여야 한다.

[환 경]

(원칙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여야 한다.

(원칙8) 기업은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원칙9) 기업은 환경친화적인 기술개발 및 확산을 촉진 한다.

[반부패]

(원칙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의 모든 종류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인 권(Human Rights)

원칙 1: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 **이행방침**

-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인된 국제 인권선언 및 정책에 따라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하며 이를 위해 노력한다.

■ **이행체계**

-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정관, 인사 및 복무규정 등 내부규정에 의해 인권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직원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해관계자 및 지역주민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인권보호 노력을 추진하며 각종 인권향상 프로그램을 지원·운영하고 있습니다.

■ **활동성과**

- 인권보호 관련 내부규정

구 분	주요내용
정 관	제19조(신분보장) 공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에 따른 당연퇴직 또는 징계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지 아니한다.
인사규정	제66조(분쟁의 자율적 해결)직원으로부터 구두·서면·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고충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고충처리위원회에 위임하여 고충처리를 하는 등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감사규정	제15조(공익신고자의 조치) 이사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누구든지 임직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사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외부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기타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지침, 성희롱예방 지침 등 운영

● 사회적 공헌활동

구 분	주요내용
공공구매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구매) 사회적기업 및 중소기업, 여성기업, 중증장애인 기업 등의 제품을 구매하여 사회소외계층의 생활과 인권을 지원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과의 업무협약 체결, 물품구매, 시장행사 지원, 주차환경개선, 온누리 상품권 구매 등을 통해 지역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소외계층 맞춤형 봉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공단 기금조성 및 물품지원 등을 통해 기초 생활을 지원하고, 한편으로 저소득층 자녀 등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헌혈증 기증, 문화강좌 프로그램 참여 등 운영 - (어르신)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일자리 사업 참여 등을 통해 노년의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 한편으로 건강증진교육 사업 및 어르신 특화 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르신의 건강 삶을 지원 - (장애인)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확대, 전용주차구획 확대 등을 통해장애인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자전거체험교실, 맞춤형 수영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원 - (아동청소년) 직업체험교실 등을 운영하여, 직업 및 진로 선택을 지원 - (여성) 임산부 보호차량 주차구획 운영, 임산부요가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의 취미활동과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역 및 단체와 협력 봉사활동	서울시설 관리공단 등 12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계아띠 활동 •청계천 일정구간을 기관별로 담당하여 정화활동
	그린 트러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숲 가꾸기 •서울숲 내 습지생태원 청소(28명 참석)
	성동사회적 경제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플리마켓 활동 • 성동체육센터 앞마당 장터 2회 개최
	더그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TED 벽화그리기 • 옹벽 등 환경개선을 위한 벽화 그리기(19명 참석)
	호오 생활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홀몸어르신을 위한 목도리 뜨기 (14명 참석, 목도리 전달)

□ 어르신 건강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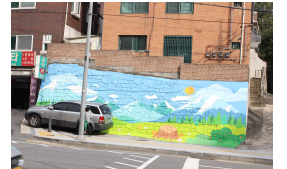
□ 어린이자전거체험교육



□ 서울숲 가꾸기



□ CPTED 벽화그리기



■ 2019년 목표

-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직원들의 다양한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 강구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경영 실시를 위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인권침해 요소 제거에 힘쓰겠습니다.
- 이해관계자나 지역주민 및 고객의 의견수렴 방법을 다양화하고, 인권보호 취약층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과 인권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원칙 2: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이행방침

-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임직원, 협력업체, 고객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사전적 예방활동이 강화된 고충처리체계를 운영한다.

이행체계

-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고객현장, 서비스이행표준 등 고객만족 관련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클린신고센터,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조사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또한 내부적으로 고충상담반, GWP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동성과

- 전문 리서치기관을 통한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관리

구 분	주요 내용			
고객만족도	- 조사기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조사기간: 2018. 11월 - 조사결과: 87.2점/100.0점(2017년 대비 1.7점 하락)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CSI	87.2점	88.9점	84.6점
종합청렴도	- 조사기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조사기간: 2018. 11월 - 조사결과: 종합청렴도 8.78점/10.00점(2017년 대비 0.27점 하락)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청렴도	8.78점	9.05점	9.20점

- 고충해결을 위한 기준 마련

구 분	주요 내용
분쟁 및 고충 해결 지원 활동	<p>(인사규정)</p> 제66조(분쟁의 자율적 해결)직원으로부터 구두·서면·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고충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고충처리위원회에 위임하여 고충처리를 하는 등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67조(고충처리위원회 설치)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p>(노사협의회 규정)</p> 제29조(고충처리위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구 분	주요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성희롱 방지 및 예방활동</p>	<p>(취업규정) 제63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지 않는다. 제6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①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한다. ②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이 제기 되었을 때에는 그 주장을 제기한 직원이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직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제65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①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남녀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p>

● 온오프라인 신고채널 운영

구 분	주요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클린신고센터</p>	<p>- 고객 및 지역주민, 공단 직원이 공단 내 부당하거나 부조리한 사항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p>
<p style="text-align: center;">고객불편신고</p>	<p>- 고객 및 지역주민이 공단 시설을 이용하면서 불편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신고창구 운영</p>
<p style="text-align: center;">고충상담반</p>	<p>- 고충처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심의 전 공단 직원이 업무수행시 발생하는 고충사항을 상담하도록 고충전문상담인력을 운영</p>

■ 2019년 목표

-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직원을 위해 다양한 고충처리 및 소통채널을 발굴·시행하며, 노사협의회, 노동조합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각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프로그램을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인권의 중요성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조사결과 공유



□ 노사협의회 운영



2 노 동(Labour)

■ 원칙 3: 실질적인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한다.

■ 이행방침

-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헌법, 노동관계법,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조약의 기본 정신에 따라 노동조합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보장한다.

■ 이행체계

-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업무환경 개선, 근로조건 향상 등 직원의 권익보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기적인 노사협의회 개최를 통해 상생의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활동성과

- 상호 협력적인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 중장기 노사발전계획

1단계(2016~2017)			2단계(2018~2020)		
협력적 노사파트너십 구축			선진 노사문화 정착 및 고도화		
노사관계 선진화 기반 조성	협력적 노사 파트너십 강화	현장 중심 노무관리 기반 확보	노사관계 선진화 지속 추진	참여적 노사 파트너십 확보	행복한 일터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 참여적 노사관계 선진화

- 단체협약 체결(9.20. 평가급 및 단체협약 / 11.28. 임금협약)
- 노사 임원 간담회(월 1회 실시 - 이사장 / 노조위원장)
- 노사 공동 선언 및 노사대표 정상회담(인권경영 선포 등 2회)
- 노사공동 외부기관 프로그램 참여(일터혁신워크숍 등 3회)

◆ 행복한 일터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 근로자 지원제도(EAP) 지속 운영(10명, 12건 상담)
- 일•가정 양립을 통한 직원 삶의 질(QWL) 향상 노력
- 유연근무제 활성화 및 확대, 자녀돌봄휴가 도입 등 추진

◆ 온•오프라인 경영정보 제공 등 노사 정보공유

◆ 다양한 대화채널 운영을 통한 소통의 질 향상

-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회의, 고충처리위원회
- 찾아가는 현장고충처리반 운영(총 20건 현장고충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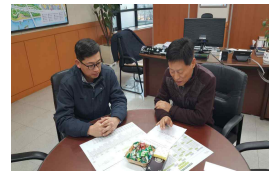
■ 2019년 목표

-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직원을 위해 다양한 고충처리 및 소통채널을 발굴·시행하며, 노사협의회, 노동조합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각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프로그램을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인권의 중요성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 노사공동 워크숍



□ 노사임원 간담회



■ 원칙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한다.

■ 이행방침

-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무시간을 준수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강제근무를 배제한다.

■ 이행체계

-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강제노동 금지에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내부 복무규정에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등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당직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유연근무제, 보상휴가제 등 일과 가정 양립 및 직원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활동성과

- 강제노동 금지 내부규정

구 분	주요 내용
취업규정	<p>제15조(근무시간) ①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고, 시업시간은 09:00 종업시간은 18:00로 한다.</p> <p>② 제1항의 시업 및 종업시간은 정부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또는 공단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근무시간은 계절 및 특수근무 직종에 따라 필요시 이사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1일 8시간 이내로 근무하도록 조정하는 경우 1일 8시간까지는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제16조(휴게시간) ①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중식시간 병행)은 12:00부터</p>

	<p>13:00까지 1시간으로 한다.</p> <p>② 휴계시간은 공단의 질서와 규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p> <p>제17조(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① 업무 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무 할 수 있고, 야간근무(22:00부터 익일 06:00까지)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신부 및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경우는 오후 10시 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p>
보수규정	<p>제5조(보수의 산정기준) ① 임원과 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한다. 다만, 보수의 성질상 일할액 또는 시간당액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액은 보수월액의 30분의 1로, 시간급은 통상임금의 209분의 1로 계산한다</p> <p>②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한다</p>

● 유연한 근무환경 제공

구 분	주요 내용
유연근무제 활성화 및 시행모델 확대	기존 유연근무제도 외에 보다 자유롭고 실정에 적합한 추가 시간선택제, 집약근무제 등 도입
연가사용촉진 제도 정착	자기개발 및 개인 가정에서의 가족과 재충전의 시간 확충
시간제 휴가 도입	휴가일(시간)를 시간 단위로 사용가능(최소 1시간 사용가능)
장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 개선	장시간 근로가 많은 현장위주의 직급인 현업직, 무기 마~바급의 시간외근로시간 조정으로 장시간근로 개선: 수당동결
가족돌봄 휴직제 도입	일시적 가족 돌봄 사유로 경력단절 근절 ⇨ 연간 최대 90일 사용
임산부 근로시간단축제도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 여성의 근로시간을 1일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육아로 인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1명 사용)
출산 전·후 휴가및 배우자 출산 휴가	임산부 직원의 출산전·후 의무적 휴가 부여 및 배우자 출산시 의무휴가 부여
휴일근무 시 여성근로자 사전 동의	일괄 휴일근무 명령 ⇨ 사전 근무여부 조사 후 근무

■ 2019년 목표

-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공익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직원의 비상근무를 실시할 경우 수당지급, 보상휴가 등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비상근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유관기관, 기업체 등에서도 강제노동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원 칙 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여야 한다.

■ 이행방침

-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아동노동을 근본적으로 배제하고,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이행체계

-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인력고용 시 최저연령 제한에 대한 내부규정을 가지고 있어 아동 노동활용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역 내 등 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활동을 통해 아동지원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 활동성과

- 아동노동 금지관련 규정

구 분	주요 내용
인사규정	제11조(채용연령 제한) 직원의 채용 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한다.

- 아동·청소년 보호 및 건강한 성장 지원 활동

구 분	주요 내용
시설점검	(관내 어린이집 안전점검)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건축, 전기누전, 가스누설 등 점검 실시
특화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진로 및 직업체험활동) 중고등학생 대상 직업(엔지니어, 스포츠 강사)체험교실 운영 (안전프로그램 운영) 초·중학생 자전거 학습프로그램 운영, 수상안전체험교실 운영
저소득층 자녀 지원	(물품지원)지역아동센터 생필품 기증 (무상프로그램 운영)저소득층 자녀 대상 체육 및 문화 무상 프로그램 운영

■ 2019년 목표

-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강제노동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원칙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 **이행방침**

-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인력고용 및 소속직원의 업무에 있어서 나이, 학력,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으며 각자의 능력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 **이행체계**

-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및 인사규정 등 내부규정에 따라 학력 및 성별 제한을 금지하고 채용관련 규정에 따른 성적이 우수한 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 차별을 근절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두고 각자의 업무 추진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직원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승진과 업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활동성과**

- 고용 및 업무에 차별 금지관련 규정 운영

구 분	주요 내용
인사규정	제7조(채용원칙)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경쟁시험에 따라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경력경쟁시험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 제7조의2(채용과정 공개) 직원의 채용과정을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취업규정	제5조(균등대우) 직원은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상의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열린 고용을 통한 사회형평적 채용(정규직 등 신규채용)
 - 정기적인 인력진단을 통해 사회형평적 인력고용과 발전기회의 공정한 부여를 통해 지역인재 육성, 국가유공자, 장애인 배려 및 여성인재, 북한이탈주민, 고령자 등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구 분	어르신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타 (다문화 등)
직원 수	123명	15명	11명	6명

※ 기타: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기능인재 등

● 양성평등 문화 구축 노력 강화

-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남녀 고용과 근로조건에서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구 분	전체 직원		간부직원	
	남	여	남	여
성(性)비율	55.8%	44.22%	88.9%	11.1%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 개선

- 기존 무기계약직 전원 정규직 전환(152명 전환 실시)
- 직무특성 및 수행능력을 반영하고 인사, 보수, 복리후생 등에서 기존 정규직과 차별없는 체계로 개선

■ 2019년 목표

-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재직원 중 여성직원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근무성적평정과 주요 보직배치 등 여성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양성평등체제를 기반으로 여성 간부직원의 배치를 확대하고, 간부직원의 여성비율 평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 환경(Environment)

원칙 7: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한다.

■ 이행방침

-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환경보존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부터 지역 주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환경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 이행체계

-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사업장별 오염유형을 4가지(대기, 토양, 수질, 소음)로 분류하고, 환경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하는 한편, 환경오염물질 정보공개 및 체계적인 관리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환경보건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활동성과

- 환경 자체 점검관리

구 분	주 요 내 용	
실내공기질	- 실내공기질 측정: 자체 - 외부 전문기관 측정	- 관내 미세먼지 점검 관리 - 실내공기질 관련 설비 점검
수질환경	- 수영장 수질관리 및 수질현황 게시	- 장비류 세관수 및 정화조 오니 위탁처리 관리
소음환경	- 공정별 소음발생 요인 파악 및 개선 대책	- 공정별 소음저감 대책 추진

- 외부기관과 연계한 환경점검 관리

구 분	주 요 내 용
MSDS관리	- 대 상: 화학물질보유 사업소 - 점검내용: MSDS 게시 상태 및 화학물질 보관 - 점검주기: 연 2회 - 점검방법: 합동점검(안전기술팀, 산업안전보건 대행업체) - 주요내용: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보관 및 관리상태 점검
환경시설물 지도점검	- 대 상: 법정검사 대상 사업소 - 점검내용: 환경관리 법정검사 준수 및 환경정비(개선) - 점검주기: 반기별 1회 - 점검방법: 합동점검
실내공기질	- 자체측정 실시(6개소), 외부 전문기관 측정 실시(2회) - 자체 실내공기질 측정 및 환경개선 후속조치(기계실 환기Fan 설치)
수영장수질	- 일일 3회 자체 점검 및 외부전문업체 수질검사 - 수질시험성적서 사업소 게시판 부착 및 홍보

● 환경관련 외부기관 인증 획득

구 분	주 요 내 용
날씨경영 인증	- 인증기관: 한국기상산업진흥원 - 인증내용: 기업경영의 전 과정에 걸쳐 기상정보 활용 - 취득일자: 2018.11.26.(인증기간 3년)

■ 2019년 목표

-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환경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접근으로 환경오염물질 발생 억제 및 화학물질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사고를 사전 예방 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원 칙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이행방침

-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친환경소비, 환경경영 확산 및 환경적 책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환경적·사회적 책임 증진에 노력한다.

■ 이행체계

-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에너지 사용량 감소 및 친환경 녹색 구매 확대를 통해 녹색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환경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가고 있습니다.

■ 활동성과

-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

구 분	주요내용
에너지 절감 목표관리제	- 대 상: 건물에 사용되는 전기, 도시가스 - 목 표: 2007~2009년 3개년 평균사용량 대비 6%절감 - 참여실적: 전기, 가스 총 21.3% 절감
수영장 오버수 재활용	- 대 상: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 주요내용: 발랜싱탱크 용량 부족에 의한 오버수 재활용
태양광 발전 시설 운영	- 총 7개소 운영(청사2개, 체육시설1개, 주차장 4개) ※ 2019년 추가설치 예정
절수기 설치	- 대 상: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등 8개 사업소 - 주요내용: 수도용 절수기 등 9종 설치

고효율 LED 조명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체실적: 16,856개(2017~18년) → 4,116개(2016년) - 보급률: 81.42%(2018년 기준)
행복한 불끄기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간: 월 1회(총 12회) - 대 상: 공단 전 사업소 - 방 법: 경관조명, 전광판(LED) 등 내·외부 전등 소등 - 참여실적: 공단청사 등 전 사업소 행사참여

● 환경보호활동

구 분	주 요 내 용
청계아띠 공동업무 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배경: 깨끗한 청계천을 위한 공동업무협약 체결 - 협약내용: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등 12개 기관이 공동으로 협업하여 청계천 정화활동 실시
생활폐기물 제로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대상: 공단 전 사업소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및 정비(총 5종 이상) ●개인 쓰레기통 사용 금지 ●공사 및 물품구매시 폐기물 저감노력(업체 회수 의무화)

■ 2019년 목표

-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에너지 사용량 감소, 친환경 녹색구매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탄소배출 저감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 정부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절약 행사에 적극 동참하고, 외부관계기관과 연계한 환경보호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 원 칙 9: 환경친화적인 기술개발 및 확산을 촉진한다.

■ 이행방침

-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환경친화적으로 개발된 기술의 확산을 위해 활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환경문제 개선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 이행체계

-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친환경기술개발 제품을 구매 및 활용하여, 친환경 제품의 기술 및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재활용선별장 운영 등을 통해 자원을 재순환시켜, 폐기물을 축소시키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활동성과

● 친환경 기술 개발 제품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

구분	주요 내용			
LED조명 설비 확대	구분	2018년	2017년	
	LED조명 교체비율	81.42%	67.73%	
태양광발전 시스템 활용	구분		설치용량	연간 발전량
	주차시설	성수2가3동 공영주차	13kW	16,623KWh
		마장축산물 서문 공영주차	8kW	10,229KWh
		용답동 공영주차	15kW	16,182KWh
		홍익동 공영주차	15kW	16,118KWh
	체육시설	마장국민체육센터	44kW	54,803KWh
	청사시설	복합청사	25kW	30,549KWh
		성동안심상가	17kW	15,677KWh
	운영효과	연간 160,181kwh 대체전력 생산으로 화석에너지 절약		

● 재활용쓰레기 선별작업 및 확대

- 선별작업



■ 2019년 목표

-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지속적으로 친환경기술개발 제품을 활용하고, 자원 재활용사업을 확대하여 지역사회를 비롯한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반부패(Anti-Corruption)

원칙 10: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이행방침

-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임직원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특혜제공, 금지된 금품 등 수수와 같은 부패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청렴사회 구현에 앞장선다.

이행체계

-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임직원 부패행위 예방을 위해 윤리경영,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윤리규범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감사활동 및 다양한 청렴활동 실시를 통해 부정·부패행위 척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매년 전 직원에 대해 청렴마일리지, 청렴의 날 운영, 청렴교육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고, 클린센터, 내외부 공익신고 채널을 운영하여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있으며, 협력업체들과 함께 청렴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동성과

- 윤리경영 및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
 - 2017년 중장기 윤리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준법경영, 상생경영, 투명경영을 새로운 추진전략으로 정하고 공단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성동구임직원행동강령을 내부 규정으로 정하여 상담소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 2회 정기교육과 업무 특성 및 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외부 전문 리서치기관을 통한 청렴도 조사
 - 공단의 청렴도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18년 청렴도 조사 결과(한국능률협회컨설팅)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종합청렴도	8.78점	9.05점	9.20점

● 부패 비리근절을 통한 청렴활동 추진

◆ 범죄고발 규정, 비리행위자 처벌 규정 등 내부규정 제도화	
	●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른 임직원행동강령 개정(2018.4.17.)
	● 감사활동 개선을 위한 규정 보완(인사규정, 감사규정, 2016.8.28.)
◆ 감사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	
	● 갑질 신고센터 운영
	● 감사지적사항 사후평가 제도 운영
	● 자체감사 업무 매뉴얼 3차 개정을 통한 업무표준화
◆ 직원 참여 청렴캠페인 추진(청렴퀴즈, 청렴주의보 발령, 청렴표어 공모 등)	
◆ 외부기관 연계활동을 통한 청렴활동 제고	
	● 청렴 및 감사분야 감사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및 업무 공유(수원도시공사 등 6개기관)
	● 청렴활동 관련 업무 회의, 세미나 참석
	● 연간 단가계약 체결 업체 등 협력업체와의 청렴 캠페인 추진
◆ 청렴교육 강화를 통한 직원 의식 개혁	
	● 부패취약업무 수행자(소모품관리, 주차요금징수)에 대한 교육 등 예방활동
	● 청탁금지법 수준별 맞춤형 교육 실시
	● 청렴도조사 및 결과 공유
◆ 내부통제를 위한 자체감사 활동 추진	
	● 정기 및 수시 감사 총 8회(특정감사 3회, 복무감사 5회)
	● 일상감사(규정 개정 및 사업 등 정책분야, 계약분야,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예산분야)

■ 2019년 목표

-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예방활동과 청렴 교육을 강화하여 직원들에게 청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청렴도 측정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패 취약분야의 청렴도 및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